

# 검 토 의 견 서

## □ 제 1 회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

### □ 공사개요

- 공 사 명 : 보문로30길46~고려대로17가길78외3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
- 공사기간 : 2020. 04.29 ~ 2020. 11. 20
- 공사개요 : 단면보수 2,560m<sup>2</sup> 제관공 132m 부대공 1식
- 계약금액 : 1,436,572천원
- 도 급 자 : 유남종합건설(주) 대표자 : 우 상 선

### □ 관련문서

- 2020-UN-1112호(2020.11.12.) 「설계변경 요청서 제출의 건」

### □ 검토내용

#### ○ 개요

사업 시행중 현장 여건 변경 및 현장조사결과, 발주처의 요청 등의 설계변경 사유로 시공사의 실정보고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사항을 근거로 작성된 설계변경 내역서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성여부를 검토 함.

#### •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 
제74조(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)  
제75조(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-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
제19조(설계변경 등)  
제20조(설계서의 불분명·누락·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)  
제21조(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)  
제23조(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)  
제26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
○ 주요 설계변경 사유

- ① 당초 용역보고서의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구간 중 당초 발주시 설계 미포함된 구간 추가 반영.
- ② NPR공법(제관공)으로 설계된 구간의 기초부분이 불규칙한 자연암반으로 형성되어 NPR공법으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술업체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보수방법을 단면보수공법으로 변경 시행후 설계반영.
- ③ 당초 계획구간 외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추가 보수대상 부분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체의 검토 결과에 의하여 추가 시행분 설계 반영.
- ④ 바닥 침식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오수 유출 발생 구간(민원사항)에 대하여 안전진단 업체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보수구간 추가 시행 반영.
- ⑤ 보험료, 산업안전관리비, 환경보전비 등 정산 금액 조정.

○ 주요 변경 현황

구간	공종	단위	당 초	변 경	증감	비고
1	단 면 보 수 (ERH)	㎡	898.03	1,107.75	증) 209.72	
2	단면보수(H-CAM)	㎡	748.70	2,103.35	증)1,354.65	
	표면보수(H-CAM)	㎡	-	157.16	증) 157.16	
3	단 면 보 수 (SH)	㎡	913.29	1,228.97	증) 315.68	
4	단 면 보 수 (NPR)	㎡	132.00	-	감) 132.00	

○ 공사비 변경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	당 초	변 경	증감	비고
제1회 설계변경	도 급 비	1,436,572	1,621,840	증)185,268	
	관 급 자 재 비	-	-	-	
	이 전 비	31,811	39,451	증) 7,640	
	총 공 사 비	1,468,383	1,661,291	증)192,908	

○ 실정보고현황 및 주요공종 수량 증감 대비표 : 별도붙임

□ 검토결과

상기와 같이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은 공사 시행 중 현장조사, 발주처지시 및 현장 여건 등에 의한 변경 사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사항을 근거로 작성된 제1회 설계변경 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2020년 11월 13일

검토자 :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하 재 민

